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6.25전쟁납북자기념관
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3년
연장하고,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
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통일부령 제 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행정서기 “9”를 “8”로 하고, 행정서기 8 다음에 “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 1”를 신설한다.

별표 1의2 중 행정서기 “8”을 “7”로 하고, 행정서기 7 다음에 “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 1”를 신설한다.

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5년 9월 30일”을 “2028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.25전쟁납북자기념관탐장은 <u>2025년 9월 30일</u>까지 존속한다. ② (생략)	통일부령 제11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9월 30일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통일부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서기	<u>9</u>	<u>8</u>	-1
<u>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상당(비서)</u>			
•	•	•	
•	•	•	

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통일부 공무원 정원표(제21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	<u>8</u>	<u>7</u>	-1
<u>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상당(비서)</u>			
·	·	·	
·	·	·	